



제420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등 마련 〉
■ 김예지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5532호)

2025. 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오 세 일

목 차

I . 개요	1
II . 검토의견	2
1.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등 마련	2

I. 개요

1.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5532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김예지의원 등 10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11. 13.
- (3) 회 부 일 : 2024. 11. 14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.

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,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·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,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·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,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1.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등 마련

-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련이 이루어지는 수련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, 평가, 지정취소의 근거 등을 법률에 두려는 것임(안 제17조,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).

현행	개정안
제17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<u>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</u> 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.	제17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) ① ----- ----- -----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-----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<u>정신건강전문요원</u> (이하 “정신건강전문요원”이라 한다)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,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.	② -----정신건강전문요원(이하 “정신건강전문요원”이라 한다)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, ----- ----- -----.
③ ~ ⑧ (생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17조의2(수련기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
나 기관을 수련기관(이하 “수련기
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
다.

1.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
관

2.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
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13
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 등으
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
설, 정신재활시설, 정신건강복지
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
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1항
에 따른 자살예방센터, 보건소
또는 정신의료기관(제1호 및 제
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
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
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
해당한다)

가.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
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
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
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

나.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
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
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

<신 설>

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. 다만,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3(수련기관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(이하 “수련기관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·방법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·방법과 제4항에

<신 설>

다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4(수련기관 지정취소 등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
2.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3. 제17조의3에 따른 수련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32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~ 5. (생략)	<u>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32조(청문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
--	--

□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하는데,

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,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¹⁾되고 2024년 6월 기준 20,176명이 양성되어 있는 것²⁾으로 파악되고 있음.

1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7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(이하 “정신건강전문요원”이라 한다)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건강간호사,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.

2) 참고로 20,176명은 1997년부터 양성된 인원의 총계이며, 2023년 12월 기준 정신의료기관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현재 재직 중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6,496명으로 파악됨.

< 정신건강전문요원 현황>

(2024.6. 기준, 단위: 명)

종별	정신건강 간호사		정신건강 사회복지사		정신건강 임상심리사		정신건강 작업치료사		합계
등급	1급	2급	1급	2급	1급	2급	1급	2급	
명	3,630	6,178	3,167	3,340	2,186	1,546	20	109	20,176
	9,808(48.6%)		6,507(32.3%)		3,732(18.5%)		129(0.6%)		

* 출처: 보건복지부

□ 또한,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련 후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, 수련은 이론·실습·학술 활동으로 구성되고, 1급은 3년간 3,000시간, 2급은 1년간 1,000시간 과정이며,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는 수련기관은 전국 308개 기관임.

<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종류 및 정원 현황>

(2023.12. 기준, 단위: 과정, 명)

직역별 기관유형	기관 수	과정 수	정원	정신건강간호사		정신건강사회복지사		정신건강작업치료사		정신건강임상심리사			
				2급 ³⁾		2급		2급		1급		2급	
				과정	정원	과정	정원	과정	정원	과정	정원	과정	정원
총계	308	422	1,508	39	542	232	544	2	5	83	275	66	142
정신의료기관	181	291	1,239	37	536	119	321	2	5	82	274	51	103
정신재활시설	76	78	182	-	-	65	148	-	-	1	1	12	33
정신건강복지센터	50	52	84	2	6	47	72	-	-	-	-	3	6
정신요양시설	1	1	3	-	-	1	3	-	-	-	-	-	-

* 출처: 보건복지부

□ 개정안이 규정하려고 하는 수련기관의 지정, 평가, 지정취소에 대하여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보면,

3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정신건강간호사, 정신건강사회복지사,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경우 해당 자료에서 1급이 없는 것은 2급 자격 취득 후 5년간 근무경력률을 통하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임.

- 첫째, 수련기관의 지정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4)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7조의2(수련기관의 지정)은 이 내용을 실질적인 사항의 수정 없이 법률로 상향하는 바, 이는 수련기관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안 제17조의4(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)을 신설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보임.
- 둘째, 수련기관의 평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「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5)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실태조사 및 지도·감독이 규정되어 있지만, 개정안 제17조의3(수련기관평가)은 이와 별도로 수련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도입하여 자료요청의 근거 조항 신설,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 추가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. 따라서 개정안 통과 시에

4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7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)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.

1.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
2.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,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(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)

가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(이하 “정신건강전문요원”이라 한다)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

나.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. 다만,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(이하 “수련기관”이라 한다)에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5) 「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5조(지도·감독 등)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, 보수교육기관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는 법률에 근거한 정기적인 평가, 시행규칙 및 고시에 따른 비
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도·감독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.

- 셋째, 수련기관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서는 규정되어
있지 않은데⁶⁾, 개정안 제17조의4(수련기관 지정취소 등)은 수련
기관 평가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등
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, 시정명령을 이행하
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취소⁷⁾를 할 수 있도록 하는바,
이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
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한편, 개정안은 부칙⁸⁾에서 개정안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
부터 지정받은 수련기관은 개정안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기관으로
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,

6) 엄밀하게는 「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」 별지2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에서 지정취소 요건을 서술하고는 있으나, 이는 단순한 안내일 뿐이어서 지정취소의 법령적 근거로
는 볼 수 없을 것임.

7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수련기관이 지정취소되는 경우 해당 수련기관에서 수련중인 사람의 수련공백이 발
생하더라도 「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안내」 지침에 따라 수련생을 이관할 수 있고, 2023년 기준 수련생의
소속 변경은 1건(사유: 지도전문요원의 괴롭힘)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나,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입법적 장
치를 법률에 들지에 대하여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
제13조의2(이동수련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(이하 “이동수
련”이라 한다)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
라야 한다.

1.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

2.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
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

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 조치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이동수련 조치의 내용·절차·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·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8)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수련기관은 이 법
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기관으로 본다.

이는 기존에 지정받은 수련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평가와 지정취소 조항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.

-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보호와 수련기관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법령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되,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수련기관의 하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<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>

부처명	개정안에 대한 의견
대한신경정신의학회	○수련과 수련외 근무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수련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필요함. ○또한, 개정안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전문기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한국정신건강 사회복지학회	○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, 정부의 예산 지원에 따라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등은 정신의료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적 상황이 열악한 바,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에 대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
02)6788-5498